

다. 겸직

1) 관련 규정

가) 국가공무원법 제64조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)

(1)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(2)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.

나)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

(1) 영리업무의 금지(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)

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,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,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,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
- ① 공무원이 상업, 공업,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
- ② 공무원이 상업, 공업,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(私企業體)의 이사 ·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· 지배인 ·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
- ③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
-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

(2) 겸직허가(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)

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소속기관의 장”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,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.

2) 영리업무의 개념: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

가)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

※ 계속성 기준 : ① 매일·매주·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,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,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,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 있는 것

나)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,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

3) 겸직허가

가) 대상: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

(1) 영리업무: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[① 내지 ④]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

(2) 비영리업무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